

4

채무 및 부채

4-1. 지방채무 현황

-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천원)

구 분	'12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13년도 현재액 E=(A+B)	인구수 (F)	1인당 채무액 (천원)(E/F)
		계 (B=C-D)	발생액 (C)	소멸액 (D)			
합 계	84,547	-11,635	974	12,609	72,912	242,077	301
일반회계	84,547	-12,609	0	12,609	71,938	242,077	297
특별회계	소 계	0	974	974	0	974	242,077
	공기업특별회계 (상수도사업)	0	974	974	0	974	242,077

- ▶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(BTL 지급액 제외)
 - ▶ '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(원금 기준)
 - ▶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.12.31일 기준(별첨)
 - ▶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
- ◆ 우리시 2012년도 채무현재액은 845억 원이고 2013년도 채무현재액은 729억 원입니다. 차액은 지방채 발행 상환금액 126억 원과 공기업 특별회계(상수도사업특별회계) 지방채 발행액 10억 원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.

❖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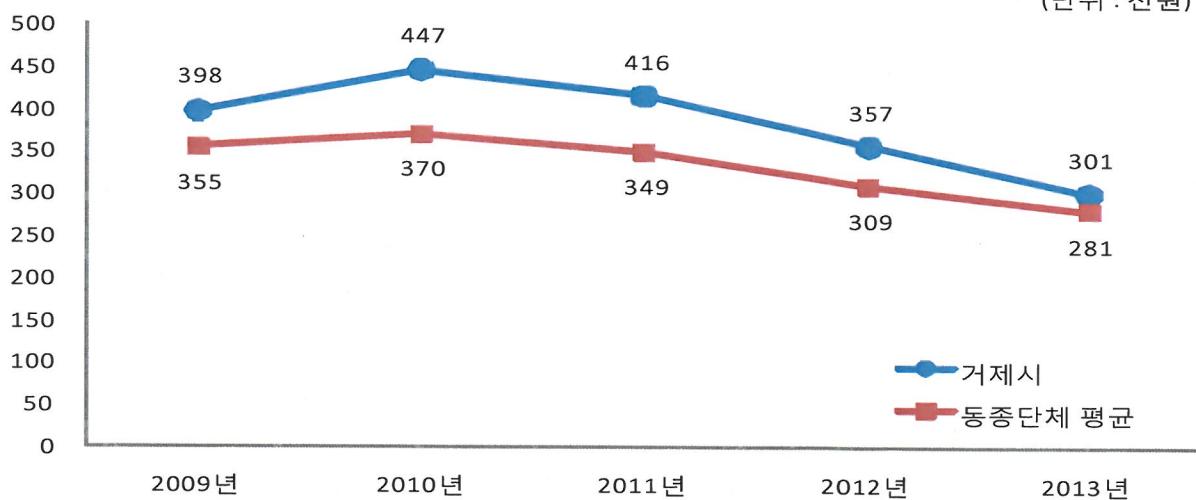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, 명, 천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채무현황(백만원)	89,699	102,000	96,726	84,547	72,912
인구수(명)	225,522	228,355	232,787	236,944	242,077
주민1인당채무(천원)	398	447	416	357	301

- ▶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
- ▶ '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

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, 동종단체와 비교

(단위 : 천 원)



- ◆ 2010년에 주민1인당 채무액이 가장 많은 이유는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및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입니다.
- ◆ 우리 시 채무는 순수 시의 채무와 국가 채무로 나누어지는데 2013년 채무 중 순수 시의 채무는 486억원이며, 국가 채무는 243억원입니다 순수 시의 채무 486억원을 인구수로 나누면 201천원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.
- ◆ 국가 채무 : 남해안 적조발생 저감을 위하여 2002년 장승포(옥포)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시 국가부담분에 대하여 우선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공하고 2021년 (20년간) 국가에서 매년 국비를 지원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입니다.

4-1-1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지방채발행한도액(A)	21,400	30,000	22,300	18,500	11,200
발행액(B)	14,850	18,400	7,500	0	974
발행비율(B/A*100)	69.39%	61.33%	33.63%	0%	8.7%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

다만,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(A)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'기본한도액'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'별도한도액'을 더한 금액을 기재

* 별도한도액 =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+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

**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=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% 이내이고,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'공공 및 기타대출'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

용어해설

❖ 지방채(地方債)

-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습니다.
-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,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되며, 차입금은 금융기관, 중앙정부,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❖ 지방채발행 한도액(地方債發行 限度額)

-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.

4-2.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

▣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'4-1. 지방채무'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3년	2012년	증 감	비고
부채(A)	103,122	121,765	-18,643	
자산(B)	2,901,367	2,800,260	101,107	
자산대비부채비율 (A/B*100)(%)	3.55%	4.35%	-0.8%	

- ▶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
- ▶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이며,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,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
- ▶ 자산은 유동자산+투자자산+일반유형자산+주민편의시설+사회기반시설+기타비유동자산임
- ▶ 2013,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

용어해설

❖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(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)

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으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회계를 말합니다.

❖ 부채

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며, 지방채무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, 퇴직금 충당금,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, 선수금 등이 부채에 포함됩니다.

4-3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▣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, 터널,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. 우리 시는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
용어해설

❖ 민자사업 재정부담

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, 터널,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.

❖ BTL

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

❖ BTO

수익성이 있는 도로, 교량, 터널,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로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.

4-4. 일시차입금 현황

-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
용어해설

❖ 일시차입금(一時借入金)

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이와 같이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고 하며,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(예산의 3% 이내)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

4-5. 보증채무 현황

-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 보증채무 현황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
용어해설

❖ 보증채무부담행위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.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·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

4-6. 지방공기업 부채

■ 우리 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3년			2012년		
	부채(A)	자본(B)	부채비율 (A/B)×100	부채(A)	자본(B)	부채비율 (A/B)×100
합 계	20,602	377,974	5.45%	26,098	295,265	8.84%
직영 기업	소 계	19,843	317,962	6.24%	25,832	270,822
	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	19,686	103,831	18.96%	25,660	91,077
	거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	157	214,131	0.07%	172	179,744
공사	소 계	759	60,012	1.26%	266	24,444
	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	759	60,012	1.26%	266	24,444

▶ '13년, '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

◆ 우리 시 지방공기업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수자원공사 위탁에 기인한 장기성 비유동부채 증가 때문입니다.